

8

긴급복지 지원사업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곤란한 가구에 대해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
- 관련근거 :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
- 지원대상 : 위기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75% 이하 가구
 - 재산기준 11,800만원, 금융기준 500만원 이하
 -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·매출감소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포함
 - 한시적 재산기준완환적용(~21. 3. 31.) : 재산 20,000만원 이하